

의안번호	2216716
의 퇴 인	조지연의원
회 답 일	2026.6.10.
추계번호	26B083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를 점검·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8억 (연평균 1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안 제13조)	400	—	200	—	200	800	160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및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의 점검 및 평가의 방법,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정부는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1항)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2.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9조(기후위험 평가)	정부는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제1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 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 5.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6.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국가 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이하 “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4	안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5	안 제12조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정부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고려하여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이하 “적응성과·진척도”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7	안 제15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이상기후·극한기후 등이 초래하는 기후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8	안 제1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이하 “취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약지원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9	안 제17조(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의 지방 기후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 수립·시행, 같은법 제38조제1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필요한 협의를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1항) 광역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10	안 제18조(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이하 “기후보험”이라 한다)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보험의 효과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2항)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범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항)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기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11	안 제19조(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로 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20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21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4	안 제22조(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이 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15	안 제23조(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정부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회복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항) 1. 기후위기 취약실태, 기후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조사·분석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16	안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산업 육성 등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17	안 제26조(재정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	·미첨부 3호 - 정부가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분석 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안 제9조(기후위험 평가)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할 경우,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의 기후변화 평가 관련 업무의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후위험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범위·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은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5년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 발간 예산은 2025년 기준 5,000만원임.
3	안 제10조(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적응정보의 표준 설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를 지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할 경우 관련 위탁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 및 조직 규모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11조(기후위기 적응 정보의 공개와 활용)	-	·미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¹⁾ 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2026년 기준 예산은 56억 2,000만원임
5	안 제12조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	·미첨부 3호(제1항 관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조사·평가 결과가 작성되지 않았고,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미첨부 3호 (제3항 관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조사·평가 결과가 작성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별 구체적 기후위기 저감사업의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6	안 제13조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7	안 제15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및 피해,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여부 및 규모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대상이 광범위한 반면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 및 조사 확대실시를 추진 중(수행기관:한국환경연구원)으로, 2025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는 실태조사 전국 단위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및 결과 분석 등에 예산 3억 5,000만원을 편성함
8	안 제1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수립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 대책에 따라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을 지원 중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113억 2,700만원임
9	안 제17조(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도 및 시·군·구 행정기관,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관, 사업자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광역협의회의의 규모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정보표준화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포럼·워크숍 및 공동논문집 발간 등을 수행하는 적응정보 생산기관(10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22.9.6~),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7,000만원임
10	안 제18조(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범사업 실시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을 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와 그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기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과 보장범위, 보험료의 산정,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여부 및 지원률·지원액 등 기후보험의 설계와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에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후보험 체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연구를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
11	안 제19조(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2	안 제20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4	안 제21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5	안 제23조(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영향·취약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평가 관련 업무의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확대될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내용·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사업」 예산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사업, 기후위험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
16	안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제고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 지원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17개 분야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실시 중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244억 7,900만원임
17	안 제26조(재정지원 등)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범위·수준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보급 및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에는 4억원,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 점검 및 평가에는 2년마다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 관련 유사사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 관련 유사사례로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적응주체별 기후위험평가 방법 연구’ 사례를 준용함

[표 2]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 관련 유사사례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적응주체별 기후위험평가 방법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주) 어스	2023. 8.~ 2024. 8.	400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기후위험지도 구축 방법 연구 ·기후위기 적응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산업단지 기후위험평가 방법 개발 및 대응 방안 연구 ·공공서비스 기후위험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 ·기후위험도 평가기법 마련 및 시범평가 지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 점검 및 평가 관련 유사사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 점검 및 평가 관련 유사사례로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사례를 준용함

[표 3]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 점검 및 평가 관련 유사사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	2025	2026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6331-301)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250	250	2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의 점검·평가는 각각 2030과 2032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를 점검·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8억원으로 추계됨

[표 4]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보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보급	400	—	—	—	—	400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	—	—	200	—	200	400
합계	400	—	200	—	200	8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및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의 점검 및 평가의 방법,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